

## ISC 소득신고 프로그램 이용 자격요건

이민자 서비스 캘거리(ISC)에서는 **기관의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고객분들에게 3월 2일~4월 30일까지 **무료 소득신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ISC의 무료 소득신고 서비스의 이용 자격 판정을 위해 다음 항목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중 한가지 경우라도 해당되는 경우, 해당 가족은 ISC 소득신고 프로그램을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 관련 세부 사항은 상담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인 혹은 가족 중에:	해야 할 일:
1	2015년에 캐나다에 이민온 경우. (소득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2013년 혹은 그 이전부터 캐나다 거주를 시작하였어야 함)	첫 소득신고를 하려면 2016년 3/4월까지 기다리세요
2	자영업, 하청업(계약업) 혹은 사업경비를 신고하는 경우	회계사 혹은 전문 세무 대리인에게 연락하세요
3	해외 근로중인 배우자가 있는 경우(하단 설명 참조)	세무 대리인에게 연락하세요
4	임시소득이 있는 경우(예: T4 발급 없이 임금을 현금 혹은 수표로 받은 경우) 그리고 총액이 \$3,500/년 이상인 경우	회계사 혹은 전문 세무 대리인에게 연락하세요
5	가족 전체의 이자 소득이 \$1,000 이상인 경우	세무 대리인에게 연락하세요
6	사업 혹은 임대자산이 있는 경우	회계사 혹은 전문 세무 대리인에게 연락하세요
7	주식이나 채권 보유한 경우(은행 통해 보유하여 관련 소득에 대해 T3 나 T5 발급 받은 경우 제외)	세무 대리인에게 연락하세요
8	2014년에 파산했거나 파산 신청한 경우	파산관련 담당자에게 문의하세요
9	2014년에 사망한 경우	55세 이상이라면 커비센터(Kirby Centre) 전화 403-265-0661 혹은 방문 1133-7th Ave. SW, Calgary, AB T2P 하세요.
10	2014년 말에 임시근로자 신분이었던 경우	센터포뉴커머(Centre for Newcomers): 전화 403-536-8244 혹은 이메일 taxclinic@centrefornewcomers.ca 로 연락하세요
11	ISC의 소득기준액을 초과한 경우(하단 설명 참조)	회계사 혹은 전문 세무 대리인에게 연락하세요

(3번항 안내) ISC는 해외에서 근로소득이 있는 배우자가 있는 고객의 소득신고를 도와 드리지 않습니다. 해당 예:

- 영주권 카드를 획득하기 위해 캐나다에 입국 후,
- 캐나다에 단기간(6개월 미만) 거주하다가, 그리고
- 본국으로 돌아가 일을 계속한 경우(해외소득 발생)

(비거주 배우자가 이민관련 캐나다 영주권자일 수는 있으나, 세무상 캐나다 거주자로 고려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

참조: ISC는 배우자가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여도 다음의 경우 고객의 소득신고를 도와 드릴 수 있습니다:

- 배우자가 해외소득이 없는 경우,
- 배우자가 이민관련 현재 영주권자가 아닌 경우, 혹은
- 배우자가 캐나다 회사나 정부기관에 소속되어 해외 파견 근무하고 있으며, 정확한 소득총액을 알고 있는 경우(배우자의 캐나다 소득신고 서류상 236항에 해당하는 숫자)

(11번항 안내) 가족 총소득 계산법

- **가족 총소득에 자녀의 소득을 포함하지 마십시오.**
- **가족 총소득에 해당되는 소득:** 캐나다내 고용소득 (T-4), 정부 지원금, 사회 보조금 및 산재보험 (T5007), 고용 보험 (T4E), 육아 보조금 (RC62), 투자소득 (T5 or T3), 노후보장적금 (T4RRSP or T4RIF 출금액만 해당), 학자금 지원금(T5007, T4E or T4A), 및 장학금(T4A).
- 캐나다 도착 후 발생한 모든 해외 소득을 포함합니다.
- **가족 총소득에 미해당되는 소득:** 부가가치세 환급액(GST); 캐나다 자녀세액공제(CCTB), 연방 저소득 근로자 소득세 혜택 및 알버타 저소득 근로자 가정 세금 공제액.
- 부모님이 ISC의 소득신고 프로그램의 이용자격이 되지 않더라도 자녀분이 이용자격이 된다면 자녀분에 한해 소득신고를 도와 드립니다.

귀하의 가정 총소득은 반드시 아래기준보다 **낮아야 합니다:**

일반 가정	최대 가정 소득	한부모 가정	최대 가정 소득
1 person	\$30,000	1 person	\$30,000
Couple	\$40,000	1 dependent	\$35,000
1 dependent	\$42,500	2 dependents	\$37,500
2 dependents	\$45,000	3 dependents	\$40,000
Extra Person	\$2,500	Extra Person	\$2,500

## ISC 소득신고 프로그램 이용 자격요건

### 귀하께서 ISC의 소득신고 프로그램 이용 자격요건이 되지 않는 경우:

- 자영업, 하청업(계약업)자로 임시소득이 있거나 혹은 사업을 운영하거나 임대 자산이 있어서 경비청구를 하시는 경우, 귀하께서는 회계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에게 맡기시어 비용청구가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셔야 합니다. 회계사가 필요하신 경우, 가족이나 친구에게 추천을 요청하시거나 전화번호부(Yellow Pages-책 혹은 인터넷상)의 회계사(Accountants) 란을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 만일 귀하께서 전문 세무 대리인이 필요하시다면, 가족 혹은 친구에게 추천을 요청하십시오. 그렇지 않다면 전화번호부(Yellow Pages-책 혹은 인터넷상)의 전문 세무 대리인(Tax Return Preparation) 란을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 귀하께서 매우 훌륭한 영어/프랑스어 실력을 갖고 계시지 않으며 “캐나다 국세청의 소득신고 및 환급 안내서 Canada Revenue Agency General Income Tax and Benefit Guide”를 명확히 이해하고 계시지 않다면, 직접 소득신고를 하는 것을 추천 드리지 않습니다. 이 안내서는 매우 상세하고 복잡합니다. 안내서와 소득신고 양식은 캐나다 우편물 취급소 전역에 2월 초부터 무료로 배포됩니다. 직접 소득신고를 하기로 결정하셨다면, 부디 신중하게 하십시오.
- 소득신고는 소프트웨어를 사용해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올바르게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시려면, 귀하께서는 여전히 관련 세무 지식이 필요합니다.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직접 소득신고를 하기로 결정하셨다면, 부디 신중하게 하십시오.

귀하의 가족 구성원중 ISC의 소득신고 프로그램 이용자격이 되시고 서비스를 위해 예약이 필요하신 경우, 담당 상담사에게 문의하세요.